의안번호	2205701
의 뢰 인	박덕흠의원
회 답 일	2024.12.24.
추계번호	24B520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0억원, 2030년 90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40억원(연평균 88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총 220억원(연평균 44억원) 이상

○ **(지방비)** 5년간 총 220억원(연평균 44억원) 이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수급 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안 제9조제6항 신설) - 수급관리센터 지원		8,000	9,000	9,000	9,000	9,000	44,000	8,800
	국비	4,000	4,500	4,500	4,500	4,500	22,000	4,400
	지방비	4,000	4,500	4,500	4,500	4,500	22,000	4,400

주: 1.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전체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각 50%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시·도지사는 생산자 대표로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제1항)	재량규정
2	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3항(계약생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농산물 수요자 간 사전에 일정기간 공급 물량과 가격조건 등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거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 제2항에 따른 계약거래를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3	안 제9조제1항(수급 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 수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으로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수급 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 수급안정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4항) 1. 사전 재배면적 관리 2. 병해충 방제 등 생육 관리 3. 출하 시기 조정 등 출하조절 4.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및 계약거래 장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5	안 제9조제6항 신설(수급 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 수급관리센터 지원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의 집행기관으로 관할구역 내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6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마늘·양파 등 2개 품목에 대해 주산지협의체의 운영 경비 지원중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사업명: 밭작물주산지수급거버넌스사업 - 지원 품목: 마늘, 양파 2개품목 - 지원 대상 지자체 : 마늘 5개소(충남, 전남, 경북, 경남,

<table>
<tr><th>연번</th><th>조·항(조제목)</th><th>추계여부</th><th>비고(추계 미실시 사유)</th></tr>
<tr><td></td><td></td><td></td><td>제주), 양파 5개소(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사업내용: 선제적 수급관리(적정 재배면적 관리 등)를 위한 주산지협의체 운영 경비 지원
– 사업비 산출내역: 국비 817백만원
① 주산지협의체 운영 : 800백만원
10개소×160백만원×국비 50%
② 행정경비 17백만원×국비 100%

<밭작물주산지수급거버넌스 운영예산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table>
<tr><th>사업명</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밭작물산업육성
(3032-338)</td><td></td><td></td><td></td></tr>
<tr><td>– 밭작물주산지수급거버넌스 사업</td><td>—</td><td>817</td><td>817</td></tr>
</table></td></tr>
<tr><td>2</td><td>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3항(계약생산 등)</td><td>—</td><td>•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계약재배 소요자금 융자 지원 및 농축산물 원료매입업체에 대한 구매이행대금 지원 사업을 실시중이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기하는 것임

<계약재배 관련 사업>
– 사업내용 수급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농협,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계약재배 소요자금(품대, 제비용, 운용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
·(농업인 의무) 수급불안 발생 시 사업대상자는 출하 잔량의 30%를 지정 출하처에 출하
– 대상품목 및 계약재배 물량(평년 생산량 대비, %)
·(노지채소) 9개품목, 28.6%/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겨울대파, 고랭지감자
·(과수) 4개품목, 7.6%/사과, 배, 귤, 단감,
·(과채) 5개품목, 4.9%/풋고추,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 계약재배 사업비 : (‘24) 89,927백만원
·(노지채소) 27,268백만원
·(과수) 28,512백만원, (과채) 34,147백만원

※[참고자료 1] 계약재배 및 농산물수급안정(채소가격 안정제 등) 관련 사업 현황 참고</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조·항(조제목)</th><th>추계여부</th><th>비고(추계 미실시 사유)</th></tr>
<tr><td></td><td></td><td></td><td><계약재배 관련 사업 예산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table>
<tr><th>사업명</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3033-304)</td><td></td><td></td><td></td></tr>
<tr><td>- 수급안정지원</td><td>359,924</td><td>323,932</td><td>308,407</td></tr>
</table>
주: 융자상환도래액을 제외한 실제 계약생산 지원자금

<국산 농축산물구매이행보증보험>
- 사업내용 : 중소식품제조 식자재 업체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해 구매이행대금 지원
· 지원대상 :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매입하는 업체(식자재, 가공업체 등)
· 보증금액: 최대 2억원/ 보증기간: 1년이내
· 보험사: 서울보증보험
· 보험요율: (법인) 0.533%～4.973%
· '23년실적: (예산) 2억, (지원실적) 208개사, 보험료 지원액 189백만원, 구매실적 469억</td></tr>
<tr><td>3</td><td>안 제9조제1항(수급 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 수매 지원</td><td>×</td><td>•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채소류 등 가정안정을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향후 수매 대상품목 및 수급불안 여건을 예측하기 불가하여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td></tr>
<tr><td>4</td><td>안 제9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수급 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 수급안정사업 추진</td><td>×</td><td>•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의 주요 기능인 수급조절기능을 2026년부터 '수급안정사업'(안 제9조)으로 확대·개편하고, 가격차 보전 기능은 수입안정보험 품목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그러나 추계기간 동안 수급안정의 대상 품목 및 사업물량, 출하조절 및 계약출하물량, 가격보전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자료 2] 채소가격안정제 개요,
[참고자료 3] 2026년 수급안정사업 시범사업 개요(안)
[참고자료 4] 수입안정보험 사업 개요 참고</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조·항(조제목)</th><th>추계여부</th><th>비고(추계 미실시 사유)</th></tr>
<tr><td></td><td></td><td></td><td>
<채소가격안정제와 수급안정사업 비교>
<table>
<tr><th>구분</th><th>채소가격안정제
('25년)</th><th>수급안정사업
('26년~)</th></tr>
<tr><td>대상품목</td><td>노지채소류 7개</td><td>채소류·과일류 등 21개 품목
* 수입안정보험 품목</td></tr>
<tr><td>사업내용</td><td>①수급조절: 출하조정, 산지폐기
②가격차보전: 기준 가격의 80~60%</td><td>생육단계별 수급조절 기능 확대
* 재배면적관리, 생육관리, 출하조절, 계약거래 활성화</td></tr>
<tr><td>재원
(분담률)</td><td>국비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td><td>(잠정) 국비 40, 지자체 30, 농협 10, 농업인 20</td></tr>
<tr><td>'25년
예산</td><td>207억원</td><td>—</td></tr>
</table>
<계약재배 관련 사업 예산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원)
<table>
<tr><th>사업명</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3031-326)</td><td></td><td></td><td></td></tr>
<tr><td>- 채소가격안정지원</td><td>55,190</td><td>55,190</td><td>20,716</td></tr>
</table>
주: 융자상환도래액을 제외한 실제 계약생산 지원자금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추계기간 동안 수급안정보험 도입 품목(21개 품목)에 대하여 채소가격안정제 실제 투입된 예산에 근거하여 추계 시, 2026년에는 120억원(4개 품목), 2030년에는 630억원(21개 품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참고자료 5]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 비용 산출 참고
</td></tr>
<tr><td>5</td><td>안 제9조제6항 신설
(수급 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 수급관리센터 지원</td><td>○</td><td>•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td></tr>
</table>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의 주요 기능인 수급조절기능을 2026년부터 안 제9조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가격차 보전 기능은 수입안정보험 품목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참고자료 1] 계약재배 및 농산물수급안정(채소가격안정제 등) 관련 사업 현황,
[참고자료 2] 채소가격안정제 개요,
[참고자료 3] 2026년 수급안정사업 시범사업 개요(안)
[참고자료 4] 수입안정보험 사업 개요 참고

나. 수급 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수급관리센터 지원(안 제9조제6항 신설)

❑ 본 추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도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비용에 대하여 추계

○ **(수급관리센터 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급안정사업은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각 시·도의 수급관리센터는 2026년 8개소, 2027년 이후 9개소 설치·운영 예정

- **(9개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1개소당 설치·운영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급관리센터 1개소당 소요비용은 연간 10억원 규모

※ 수급안정사업 초기 단계(설치비 및 운영비) 및 본격 운영에 따른 확대 단계(운영비)에서 각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비용으로 연간 10억원 지원중(국비 100%)[1)]

○ **(분담률)**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각 50%

❑ 추계결과, 시·도지사가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40억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총 220억원

○ **(지방비)** 5년간 총 220억원

[표 2] 시·도 수급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수급관리센터 설치 수 (A, 개소)	8	9	9	9	9	—
1개소당 지원금액 (B, 백만원/개소)	1,000	1,000	1,000	1,000	1,000	—
지원금액 (C=A×B, 백만원)	8,000	9,000	9,000	9,000	9,000	44,000
- 국비(D=C×50%)	4,000	4,500	4,500	4,500	4,500	22,000
- 지방비(E=C×50%)	4,000	4,500	4,500	4,500	4,500	22,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자조금지원(3031-325)-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 ('22년)~('25년) 각 10억원
- 자조금단체 설치지원, 단체 담당자 직무교육, 통합콜센터운영, 홍보 등 자조금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 경비(의무 18개, 임의 4개 총 22개 품목 관리)

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전체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assembly.go.kr

[참고자료 1] 계약재배 및 농산물수급안정(채소가격안정제 등) 관련 사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계약재배 관련 사업 및 개요

○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 **(수급안정지원)** 노지채소·과수·과채 계약재배 소요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및 수급 안정 도모
- **(밭식량작물수매지원)** 수매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 **(두류·맥류계약재배)** 두류·맥류 재배농가 등 실수요업체의 계약재배 소요자금 지원을 통해 소비기반 확대 및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채소가격안정지원)** 노지채소류 수급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면적조절, 출하정지, 조기출하 등 수급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가격차액 보전, 출하장려금, 산지폐기 비용 등 지원

❑ 계약재배 대상 주요 농산물 품목

○ 수급안정지원: (노지채소)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감자, 당근, 양배추 / (과수) 사과, 배, 감귤, 단감 / (과채) 오이, 호박, 풋고추, 가지, 토마토

○ 밭식량작물수매지원, 두류·맥류계약재배 : 콩, 팥, 녹두, 밀 등

○ 채소가격안정지원 :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감자

❑ 하한가격 결정 절차 및 주요 농산물별 하한가격 예시

○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9호)

- 무, 배추, 대파, 당근 등 비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5개년 경영비의 평균치를 적용
- 고추, 마늘, 양파 등 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통계청 생산비 통계 5개년 직접생산비의 평균치를 적용. 다만,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가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를 하한가격으로 함

❑ 계약재배 및 농산물수급안정 관련 예산 현황

<계약재배 및 농산물수급안정 관련 예산 현황: 2021~2025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산지유통 종합자금 (융자) (3033-304)	수급안정지원	노지채소(9개 품목), 과수(4개 품목), 과채(5개 품목)의 계약재배 소요자금 지원	302,072	340,506	359,924	323,932	308,407
	밭식량작물 수매지원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지원	9,349	8,930	8,484	8,484	9,200
	두류·맥류 계약재배	두류·맥류 계약재배 농가 등 대상 소요자금 지원	44,948	39,806	40,912	23,666	25,549
	소계		356,369	389,242	409,320	356,082	343,156
농산물생산 유통조절지원 (3031-326)	채소가격안정지원	노지채소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수급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가격차액 보전, 출하장려금, 산지폐기비용 등 지원	34,063	40,443	55,190	55,190	20,716
	유통협약·명령지원	유통협약·명령 이행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경비 및 부대 비용 지원	—	445	445	400	400
	소계		34,063	40,888	55,635	55,590	21,1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채소가격안정제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도입경과) 계약재배만으로는 농가의 소득안정 및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이 어려워 노지채소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16년부터 도입

(단위: 억원)

구분	'16년(시범)	'17	'18	'19	'20	'21	'22	'23	'24	'25
신규 대상품목	배추 (여름, 겨울), 무(겨울)	배추·무 (숟작형), 양파, 마늘	고추, 대파	—	감자	—	—	—	—	—
예산(억원)	35	100	168	186	241	340	451	552	552	211

❑ (주요내용) 농업인 또는 농협이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평년가격 대비 하락시는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

○ **(의무 사항)** 수급상황에 따라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前 면적조절(생육단계 폐기), 출하정지, 출하조절의 수급조절 의무 이행

- **(과잉시)** 가입물량의 50%까지 출하前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시기 조절 등을 이행, 출하물량을 감축하거나 홍수출하 방지
- **(부족시)** 가입물량의 50%까지 출하시기 조절, 도매시장 집중 출하 등을 이행, 도매시장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방지

○ **(지원 사항)** 공동재원*을 활용해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따른 소요 비용** 지원하고, **평년 가격의 최대 80%** 수준 보장

*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경제지주 10, 사업농협 10), 농업인 20%

** (출하前 면적조절 및 출하정지) 소요된 생산비 수준, (출하조절) 운송비·작업비

❑ (추진체계) 지자체·농협·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급대책 수립·추진

사업 신청 및 계획 수립		물량 · 예산 배정		계약 및 재원조성		수급대책 추진
(협의체) 신청, 계획 수립 (농식품부) 계획 승인	➡	(농식품부) 시도별 배정 (협의체) 지역농협별 배정	➡	(농협) 농업인과 계약 체결 및 공동재원 조성	➡	(협의체) 대책수립 · 의결 (농협) 대책시행 및 정산

붙임 채소가격안정제 발동 사례

1 가격차보전: 22년산 제주 조생양파

❑ (보전방법) 당해연도 도매시장(가락시장) 거래가격이 5년 평년가격(기준가격)의 80% 수준(보전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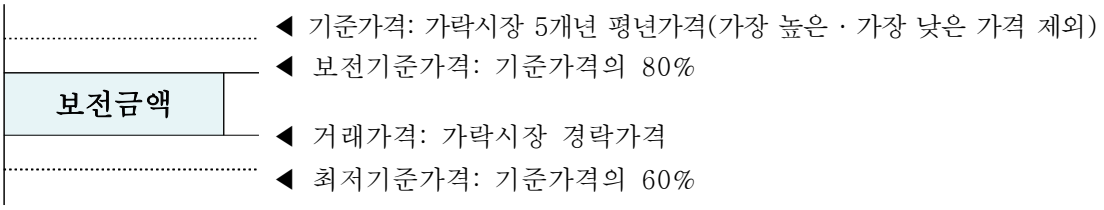

○ 보전산출방식: 거래가격이 보전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보전기준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을 사업비에서 보전

❑ (보전사례) 제주 조생양파('22. 3월 하순~5월 상순, 8,541톤/420백만원)

❑ '22년산 재고량 이월, 조생종 생산량 증가로 4월 상품 도매가격은 평균 611원/kg, 평균가 471원(전년비 39%↓, 평년비 32%↓)

(단위:원/kg)

순기별	시장가격(도매가격)					농가	생산비	보전기준	최저기준	차액
	특	상	중	하	평균	수취가*	경영비	가격(80%)	가격(60%)	(보전단가)
3월 하	618	393	256	160	303	233	434	794	595	199
4월 상	841	492	289	146	359	271	309	781	586	195
5월 상	666	551	478	335	484	372		577	433	93

* 농가수취가: 도매평균가격-출하제비용(상장수수료 포함)을 제외한 금액
* 시장평균가격이 최저기준가격보다 낮더라도 보전 기준가격과 최저기준가격 차액만 보전

2 출하정지 및 산지폐기: 22년산 제주 조생양파

❑ (보전방법) 가격하락 시 출하대기 포전을 확정 후, 가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포전 정리 및 손실보전

○ 보전금액: 보전기준액(기준가격 × 농업인수취율 - 출하비용) × 출하정지 면적

❑ (보전사례) '22년산 조생양파('22.3.22.~4.30.) 2.3만톤 출하연기(200원/kg 선지원)하고, 제주조생양파 94ha 산지폐기* 실시

* 산지폐기(물량): 94ha(2,643톤), 지원단가: 453원/kg(9,060원/평), 사업비: 1,197백만원

3 출하장려: 22년산 강원 고랭지 배추

❑ 고랭지 배추('22. 9월 상순) 위기단계 심각으로 1,468톤(165대), 248백만원 지원

* 배추 도매가격('22.8.29.~8.31.): 19,223원/10kg(상승심각)
* 배추 7~8월 평균: 14,403원

(참고) 22년산 조생양파 기준가격 및 거래가격 산출기준 <순별 산출>

❑ 기준가격(평년가격): 857원/kg

(단위: 원/kg)

3월 하순	4월 상순	4월 중순	4월 하순	5월 상순
992	976	863	732	721

* 산출기준: 가락시장 등급별 물량비를 반영한 **가중평균**의 5개년 평년가격
(평년가격: 최대년, 최소년 제외한 3개년의 평균가격)
* 가락시장 등급별 물량비(양파 품목) : 특(5%), 상(35%), 중(40%), 하(20%)
例)'16.7 등급별 가격(특품 814, 상품 723, 중품 591, 하품 409)
가중평균은 612(=814×5% + 723×35% + 591×40% + 409×20%)

❑ 보전기준가격(차액보전의 기준): 686원/kg

(단위: 원/kg)

3월 하순	4월 상순	4월 중순	4월 하순	5월 상순
794	781	690	586	577

* 산출기준: 기준가격×80%
* 보전기준가격은 보장가격이 아님. 평년가격과 당해연도가격과의 차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임

❑ 최저기준가격: 514원/kg

(단위: 원/kg)

3월 하순	4월 상순	4월 중순	4월 하순	5월 상순
595	586	518	439	433

* 산출기준: 기준가격×60%

❑ 시장평균가격(가락시장)

* 순별 가중평균: [∑{(해당순기 일자별 등급별 가격)×등급별 물량비{특(5%), 상(35%), 중(40%), 하(20%)}]/(해당순기 영업일수)

[참고자료 3] 2026년 수급안정사업 시범사업 개요(안)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필요성

○ 전국 단위 사업추진에 앞서 **생산자가 참여**하는 **수급 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 일부 품목 주산지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 (대상 품목) 마늘, 양파, 포도, 양배추('25년 수입안정보험 품목)

❑ (대상 지자체) 품목별 주산지 관할 광역지자체

○ **과수(포도)**는 주산지 지정 기준이 없어 연내 **주산지 지정기준 마련할 계획**

< 2026년 수급안정사업 대상 지자체 및 품목(안) >

지자체	수급 관리 품목(안)
경기·충북	포도(주산지 지정 기준 마련 필요)
충남	마늘
전북	양파
전남·제주	마늘, 양파, 양배추
경북	마늘, 양파, 포도(주산지 지정 기준 마련 필요)
경남	마늘, 양파, 포도(주산지 지정 기준 마련 필요)

❑ (사업 시행 주체) 농협 도 지역본부

❑ (사업 기간) 1년

○ '25년은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산지협의체 정비, 농가 교육 등 시범사업 준비기로 활용

❑ (사업 내용) 주산지협의체에서 결정한 수급 관련 사항 전부

○ 생육단계별 재배면적 관리(산지폐기, 추가정식 등), 생육 점검, 출하조절(조기출하 장려금 지급, 출하 정지 등), 계약거래 확대 등

❑ (재원) 국가 40% / 지자체 30 / 농협 10 / 농업인 20

○ **(사업비 부담)** 자조금 조성 품목(마늘·양파·포도)은 **자조금**으로 농업인 부담을 대신, 자조금 미조성 품목(양배추)의 농업인 부담분은 **주산지 농협** 등에서 부담 가능, 농협은 해당 품목 자조금단체 설립 유도

○ **(사업비 집행)** 주산지 시·군에서 집행한 사업비는 **시·군과 관할 품목 농업인 부담분**에 **국비·광역지자체 부담분**을 매칭

❑ 수입안정보험 확대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 품목 확대

○ 산지유통인 취급 비중이 높은 품목(무·배추 등), 주산지협의체 또는 자조금 미조성 품목(과수·시설채소 등)은 **수급 의사결정 체계 구축, 농가 교육 등**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시범사업 추진

<수입안정보험>

품목		2025	2026	2027
마늘		본사업		
양파		본사업		
포도		본사업		
양배추		본사업		
감귤			시범	본사업
복숭아		시범	본사업	
배추	봄		시범	본사업
	여름		시범	본사업
	가을	시범	본사업	
	겨울		시범	
무	봄		시범	본사업
	여름		시범	본사업
	가을	시범	본사업	
	겨울		시범	본사업
단감		시범	본사업	
사과, 배			시범	본사업
파, 시설수박			시범	본사업
시설딸기, 고추, 토마토, 풋고추, 시설오이, 파프리카, 시설호박, 참외				시범

⇔

<수급안정사업>

2025	2026	2027	2028
채소가격안정제	시범	본사업	
	시범	본사업	
	시범	본사업	
	시범	본사업	
		시범	본사업
		시범	본사업
		시범	본사업
		시범	본사업
		시범	본사업
		시범	본사업
		시범	본사업
		시범	본사업
		시범	본사업
		시범	본사업
		시범	본사업
			시범

[참고자료 4] 수입안정보험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15~)

❑ (대상품목) '24년 9개 품목

* ('15) 3개(콩·포도·양파) → ('16) 4(+마늘) → ('17) 6(+고구마·가을감자) → ('18~) 7(+양배추)→ ('24) 9(+옥수수·보리)

❑ (지원내용) 순보험료의 50% 내외, 운영비 100% 지원

❑ (보장피해)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피해), 화재, 가격하락 등

❑ (소요예산) '24년 81억원, '25년 2,078억원

(단위: 백만원)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예산 (미지급금)	3,159	4,649	4,649	5,149	5,100 (17년 1,221)	5,257 (18년 108)	2,500	2,500	2,500	8,100	207,817
국고지원	4,133	3,950	17,881	5,257	5,100	4,432	2,500	2,500	2,500	–	–

❑ (가입실적) '15~'23년 동안 총 15,895ha, 17,838 농가 가입

○ 품목별 주산지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입률* 저조

* 연도별 가입률: ('15) 12.4% → ('17) 20.3 → ('19) 3.7 → ('21) 3.0 → ('22) 3.2→ ('23) 3.3

○ '23년 기준 총 7개 품목 1,233ha, 1,652 농가 가입

❑ (지급실적) '15~'23년 동안 총 12,511 농가에 보험금 89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누적 손해율은 138.8%

* 연도별 손해율: ('15) 7.7% → ('17) 31.5 → ('19) 185.6 → ('21) 67.8 → ('22) 110.0 → ('23) 150.9

* 연도별 보험금: ('15) 4억원 → ('17) 77 → ('19) 109 → ('21) 25 → ('22) 40 → ('23) 59

○ '23년 기준 총 7개 품목 1,346 농가에 보험금 58.6억원 지급

[참고자료 5]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 비용 산출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수급안정사업 추진 비용 산출

○ 수입안정보험 도입 품목(21개 품목)에 대해 채소가격안정제 실제 투입된 예산에 근거하여 산출시, 국비 기준으로 2026년 120억원(4개 품목), 2030년 630억원(21개 품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1개 품목당 약 30억원** 소요 예상**(국비 40% 기준)**

※ **(분담률)** 국가 40% / 지자체 30% / 농협 10% / 농업인 20%으로 가정

① 수급관리(사전면적조정, 산지폐기, 생육관리 등): 28억원

* '17~'23년 채소가격안정제에서 가격차 보전을 제외한 출하조절, 산지폐기 등 수급조절사업 집행에 품목별 연평균 2,862백만원 소요

② 계약거래활성화제도 도입(보험 등): **2억원**

<수급안정사업 추진 비용산출>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품목 수	4개	17개	21개	21개	21개
수급안정사업 비용	120	510	630	630	630
	(4개×30억원)	(17개×30억원)	(21개×30억원)	(21개×30억원)	(21개×30억원)

주: 2026년 예산 산출 근거: 도입품목 4개(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 품목당: 30억원 소요 × 4개품목 = 120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